

National Fire Agency 

2024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참고자료 및 서식



《 목 차 》

응시결격 사유, 복수국적자의 임용 등	1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4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 (경채분야)	5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6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7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10
소방공무원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안내	13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4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공채)	16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가점	18
소방관련학과 인정대학 현황 (그 밖의 유사한 학과 포함)	20
소방관련학과 인정 고등학교 현황 (그 밖의 유사한 학과 포함)	25
소방학개론의 범위	26
응급처치학개론의 범위	28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30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31
도핑테스트 안내문	33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35
군 차량(장비)별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	36
필기시험 답안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37
【서식 1】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38
【서식 2】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39
【서식 3】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40
【서식 4】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42
【서식 5】 필기시험 문제문의서	43
【서식 6】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44
【서식 7】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45
【서식 8】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47
【서식 9】 도핑테스트 동의서	49
【서식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0
【서식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1
【서식 12】 특수부대 복무경력 증명서 (해병대 복무자만 적용)	52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다른 법률 기준>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치료감호법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 부패방지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

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7호 위반행위**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경력경쟁채용대상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응시서류의제출등) 제3항제5호

○ '근무경력'이라 함은 단지 해당 경력과 관련된 기업·직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 예정 직렬 및 직류와 같은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단지 해당 경력과 관련된 기관·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경력을 의미하고 휴직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육아·질병에 의한 휴직 등(병가 기간 및 군인의 경우 국군병원 입원 기간 포함)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은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 시간제(기간제,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산정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을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 지급 방법, 사회보험 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가) **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 전부를 인정**(이 규정에 따른 상근근무란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상근근무: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

-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경력 계산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때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함

○ **공공경력요건**으로 응시할 때에는 법인, 민간단체(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 법인 여부 확인: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4-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수치로 기재)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p>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p> <p>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p> <p>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p> <p>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p>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p>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p> <p>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p>
3. 치아 계통	<p>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p> <p>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p> <p>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p> <p>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p>
4. 흉부	<p>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p> <p>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p> <p>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p>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p>가. 심부전증</p> <p>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p> <p>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p> <p>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p> <p>마. 유착성 심낭염</p> <p>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p> <p>사. 폐성심</p>
6. 복부장기	<p>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p>

구 분	내 용
및 내장 계통	<p>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p>
7. 생식 비뇨기 계통	<p>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p>
8. 내분비 계통	<p>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p>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p>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p>
10. 신경 계통	<p>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p>

구 분	내 용
	<p>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p> <p>라. 뇌종양 및 척수 종양</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p> <p>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p> <p>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p> <p>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p>
11. 사지	<p>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p> <p>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p>
12. 귀	<p>가.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p>
13. 눈	<p>가.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미만인 경우</p> <p>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p> <p>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p> <p>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는 제외)인 경우</p>
14. 정신 계통	<p>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p> <p>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p> <p>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p> <p>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p>
15. 혈압	<p>가. 고혈압: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p> <p>나. 저혈압: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p>
16. 운동 신경	<p>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p>

□ 신체검사 지정병원: 77개소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000 (내선 2) 02-2276-7158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15층, 종합건강진단센터	1577-0075 02-870-2039	
3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별관 3층 건강검진센터	02-2276-2335 02-2276-2355	
4	경찰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국립경찰병원(가락동), 3층 건강증진센터	02-3400-1802	
5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051-240-7830	
6	부산의료원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061	
7	부산보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141	
8	좋은강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80 (남천동)	051-610-9865	
9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 2가)	053-200-5791	
1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신당동)	053-258-4171	
1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대명동)	053-650-3534	
12	대구의료원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중리동)	053-560-7387	
13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신암동)	053-940-7522	
14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대명동)	053-620-3180	
15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학정동)	053-200-7101~2	
16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176	
17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수로 56, 뇌병원 3층 건강관리센터	032-280-6056	
18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33	032-836-1733	
19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구산동)	032-500-0266	
20	인천적십자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연수동)	032-899-4332	
21	광주보훈병원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산월동)	062-602-6300	
22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535	
23	대전보훈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신탄진동)	042-939-0407	

연번	병 원 명	시도	주 소	전 화 번 호	비고
24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042-670-5247	
25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울산 동구 대학병원로 25	052-250-8349	
26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울산	울산 중구 태화로 239	052-241-1471	
27	의료법인 해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울산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052-259-5264	
28	엔케이세종병원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61(나성동)	044-850-7888	
29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031-219-5608	
30	동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285	
31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031-820-5334	
32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경기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27	032-340-2169	
33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경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031-412-5390	
34	광명성애병원	경기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6	02-2680-7539	
35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경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1577-8013	
36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	032-621-5500	
37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경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37	031-8041-3038	
3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정자동)	031-888-0576	
39	성남시의료원	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성남시의료원 (태평동)	031-738-7007	
40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경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일동)	031-500-1182	
41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동)	031-828-5162	
42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경기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 (신읍동)	031-539-9334	
43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경기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 경기도립의료원파주병원 (금 춘동)	031-940-9109	
4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 (당왕동)	031-8046-5131	
45	강원대학교병원(종합병원)	강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효자동)	033-258-2313	
4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상급종합 병원)	강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	033-741-1670, 2	
47	강릉아산병원(종합병원)	강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698	
48	청주성모병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	043-219-8795	
49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사직동)	043-279-2366	
50	천안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041-570-7333	

연번	병 원 명	시도	주 소	전 화 번 호	비고
51	공주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041-962-1232	
52	서산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041-689-7167	
53	홍성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177	
54	보령 아산병원	충남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041-930-5555	
55	백제병원	충남	충남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취암동)	041-730-8985	
56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063-250-1296	
57	대자인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훤로 390 (우아동)	063-250-8775	
58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 (지곡동, 군산의료원)	063-472-5151	
59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전북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65 (고죽동)	063-620-1238	
60	목포시의료원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061-260-6472	
61	성가롤로병원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907-7100	
62	안동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271	
63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759	
64	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054-289-1860	
65	김천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054-429-8212	
66	포항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용흥동)	054-245-0115	
67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20	055-360-1255	
68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 경희대학교교육협력중앙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4-8	055-330-6023	
69	한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055-750-1325	
70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055-249-1234	
71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2층 건강증진센터	055-214-2050	
72	창원파티마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053	
73	창원한마음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055-225-1302	
74	제주한라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064-740-5298	
75	중앙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064-786-7280	
76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064-717-1608	
7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홍동)	064-730-3029	

4-4

소방공무원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안내

□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 검사 가능 병원: 5개소

순번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	경찰병원(국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02-3400-1269
2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051-240-7320
3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길 82	031-787-2114
5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20	055-360-1255

- ▶ 색각 이상자의 경우, 위 병원에서 색각경검사(일명 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지정 병원(77개소)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 또한, 위에 명시한 의료기관 외에 색각경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색각 관련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정기준

1색각(적색)			2색각(녹색)			3색각(청색)			색맹
약도	중도	강도	약도	중도	강도	약도	중도	강도	
0	불합격	불합격	0	0	0	0	0	0	불합격

↳ 색맹(녹색맹 포함)은 모두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가. **기준일**: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응시자에 한함

나. **가점점수 및 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 과목별 만점의 10%: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 ◆ 과목별 만점의 5%: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 제3호, 제5호

다. **적용범위**: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때에는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하는 시험에서는 과목별로 가점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가점 산정 인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받아 합격하는 사람 포함)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마.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국가보훈부, 민원24)

바.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가점 불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참고

2. 의사상자 등

가. **기준일**: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등록된 응시자에 한함

나. **가점점수 및 대상자**: 만점의 3% 또는 5%

◆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하는 대상자

-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대상자

-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다. **적용범위**: 응시자의 과목별 득점에 점수를 가산,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가점 산정 인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마. 의사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044-202-3255)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바.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3. 유의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하면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나. 가점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점 표기 및 증빙자료 첨부** (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점 표기 없음)

다. 가점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고

5-2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공채)

분야	가점비율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소방 업무 관련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잠수기능장 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응급구조사(2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사무 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국어 능력검정시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	영어		1. TOEIC 800점 이상 2. TOEFL IBT 88점 이상 3. TOEFL PBT 570점 이상 4. TEPS 720점 이상 5. New TEPS 399점 이상 6. TOSEL(advanced) 780점 이상 7. FLEX 714점 이상 8. PELT(main) 304점 이상 9. G-TELP Level 2 75점 이상	1. TOEIC 600점 이상 2. TOEFL IBT 57점 이상 3. TOEFL PBT 489점 이상 4. TEPS 500점 이상 5. New TEPS 268점 이상 6. TOSEL(advanced) 580점 이상 7. FLEX 480점 이상 8. PELT(main) 242점 이상 9. G-TELP Level 2 48점 이상
	일본어		1. JLPT 2급(N2) 2. JPT 650점 이상	1. JLPT 3급(N3, N4) 2. JPT 550점 이상
	중국어		1. HSK 8급 2. 신(新) HSK 5급(210점 이상)	1. HSK 7급 2. 신(新) HSK 4급(195점 이상)

비고

- 위 표에서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중 다음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채광(기술·기능 분야 화약류관리에 한정한다)
- 위 표에서 한국어능력검정시험·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대해서만 가점을 인정한다.
- 가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로 한다.

직무분야	종직분야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5퍼센트	기능장	기사 3퍼센트	산업기사 1퍼센트	기능사
14 건설	141 건축 (29)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거푸집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목공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실내건축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 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15 광업자원	151 채광(3)	화약류관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화약류관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화약류관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16 기계	162 기계장비설비 ·설치 (31)	공조냉동기계		승강기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산업기계설비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 보수 타워크레인설치·해체
	163 철도 (5)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체구조 전산응용조선제도
	164 조선 (7)	조선		조선선체 조선의장 항공	조선	
	165 항공 (6)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기정비 항공전기·전자 정비
	166 자동차 (8)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차량		그린전동자동차		
18 화학	181 화공 (9)	화공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공	화약류제조

직무분야	중직분야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화학분석 위험물
	182 위험물(3)		위험물			
20 전기·전자	201 전기 (16)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202 전자 (22)			광학	광학 광학기기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산업계측제어			반도체설계	
				의공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전자	전자 임베디드		전자
				3D프린터개발	전자카드	
					3D프린터응용	
21 정보통신	211 정보기술 (15)			빅데이터분석	사무자동화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212 방송·무선 (6)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213 통신 (10)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25 안전관리	251 안전관리 (27)		통신설비 가스	가스 건설안전	가스 건설안전	가스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화재감식평가		
	252 비파괴검사 (15)	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26 환경·에너지	262 에너지·기상 (13)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기상 기상감정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6-1

소방관련학과 인정대학 현황

연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2013	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대구공업대학	건축설비소방안전		상지영서대학	소방안전과		창원전문대학	소방방재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대구미래대학	소방행정학과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청양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강원도립대학	소방환경방재과		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성화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청운대학	건축설비소방학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		세경대학	소방안전구급과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민대학	소방행정학과		대불대학	소방학부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충남보건 과학대학교	경찰소방행정과	
	경북도립대학	소방방재전공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		신성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충청대학	소방안전과	
	경북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강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양산대학	소방안전관리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소방공학사	
	경산1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신대학	소방행정학과		용인송담대학	건축소방설비과		포항대학	전기소방계열	
	경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동원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경원전문대학	소방시스템학과		목원대학	소방안전관리		우송대학	소방방재학과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벽성대학	소방안전관리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한영대학	전기소방안전관리	
	계명문화대학	소방환경안전과		부경대학	소방공학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부산경상대학	소방안전관리		전남도립남도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호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군장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부산경상대학	소방행정공무원		제주산업정보대학	소방방재학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과		창신대학	소방방재학과				
2014	세경대학교	소방안전구급과		호남대학교	소방행정과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학과	
	강원도립대학	소방환경방재과		창신대학	소방방재공학과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전공		부산경상대학	소방안전계열	
	용인송담대학	건축설비소방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신대학	소방행정학과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호서대학	소방방재학과		경북도립대학	소방방재과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김천대학	소방학과		동양대학	건축소방행정학과		우석대학	소방안전학과	
	경민대학	소방행정과		해전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충남도립청양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신성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산1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청운대학	건축설비소방학과		순천제일대학	소방행정과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남대학	소방방재공학과		승실사이버대학	소방방재학과		창원문성대학	소방방재과	
	충청대학	소방안전과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과		우송대학	소방방재학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청암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전남도립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경북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서영대학	소방행정과		서정대학	소방안전관리과(주)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서영대학	소방안전과		서정대학	소방안전관리과(야)		부경대학	소방공학과		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서영대학	소방안전과(위탁)		대구공업대학	설비소방전공		해전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호원대학교	소방행정과	
	상지영서대학	소방안전과		대구공업대학	소방방재전공		제주국제대학	소방방재학과				
동원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강원대학	소방방재공학전공		제주산업정보대학	소방환경관리과					
2015	세경대학	소방안전구급과		호남대학	소방행정과		강원대학	재난관리공학전공		목원대학	소방안전관리학과	
	동강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경일대학	소방방재학과		계명문화대학	소방환경안전학과	
	강원도립대학	소방환경방재과		창신대학	소방방재공학과		대전대학	소방방재학과전공		부산경상대학	소방안전계열	
	용인송담대학	건축설비소방과		원광대학	소방행정학과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신대학	소방행정학과	
	위덕대학	건축소방안전학과		호서대학	소방방재학과		경북도립대학	소방방재과		전주대학	소방안전공학과	
	세명대학	소방방재학과		김천대학	소방학과		동양대학	건축소방행정학과		우석대학	소방안전학과	
	경민대학	소방행정과		해전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충남도립청양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신성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김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경산1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청운대학	건축설비소방학과		순천제일대학	소방행정과	
	초당대학	소방행정학과		경남대학	소방방재공학과		승실사이버대학	소방방재학과		창원문성대학	소방방재과	
	충청대학	소방안전과		대구한의대학	소방방재환경학과		우송대학	소방방재학과		한국국제대학	소방방재학과	
	청암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전남도립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경북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서영대학	소방행정과		서정대학	소방안전관리과(주)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광주대학	소방행정학과	
	서영대학	소방안전과		서정대학	소방안전관리과(야)		부경대학	소방공학과		가천대학	소방방재공학과	
	서영대학	소방안전과(위탁)		대구공업대학	설비소방전공		해전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호원대학	소방행정과	
	상지영서대학	소방안전과		대구공업대학	소방방재전공		제주국제대학	소방방재학과				
동원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강원대학	소방방재공학전공		제주산업정보대학	소방환경관리과					
2016	동의대학	소방행정학과		우송정보대	소방안전관리과		동원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과		대전보건대	재난시설안전과	
	한국국제대학	소방방재학과		원광대학	소방행정학과		동강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김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원대학	소방안전관리전공		순천제일대	소방방재과		위덕대학	건축소방안전학과		상지영서대학	소방안전과	
	김천대학	소방학과		동신대학	소방행정학과		엘리사이버대	재난소방학과		경남대학	소방방재공학과	
	호원대학	소방안전관리학과		경북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부산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과		초당대학	소방행정학과	
	호산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광주대학	소방행정학과		강원대학	소방방재공학과		대전대학	소방안전학과	
	충남도립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호서대학	소방방재학과		강원대학	재난관리공학		가천대학	설비소방공학과	
	대원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부경대학	소방공학과		호남대학	소방행정학과		우송대학	소방방재학과	
	서영대학	소방행정과		경민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세한대학	소방행정학과		서정대학	소방안전과	
	서영대학	소방안전과		경일대학	소방안전과		구미대학	소방안전과		계명문화대학	소방환경안전과	
	대구한의대	소방방재환경학과		부산경상대학	소방안전공학과		우석대학	소방안전학과		창신대학	소방방재공학과	
	전남도립대	소방전공학과		대전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과		충청대학	소방안전과				
	강원도립대	소방환경방재과		세명대학	소방방재학과		청암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목원대학	소방안전관리학과		경북도립대	소방방재과		동양대학	건축소방행정				
	2017	가천대학	설비소방공학과		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상지영서대학	소방안전과		전주대학	소방안전공학과

연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과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창원문성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대전대학교	소방안전학과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과		청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양대학교	건축소방행정학과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계문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호남대학교	소방행정과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동의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우송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호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018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4년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4년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2년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3년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청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2년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4년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2년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3년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3년	동양대학교	건축소방행정학과	4년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2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과	4년
	계문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4년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	4년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	우송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국가평생교육원	소방학 전공	4년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2년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4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일반사회맞춤형반)	2년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소방행정학과	4년				
2019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4년제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소방방재환경전공	4년제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강동대학교	경찰소방과	2년제	대림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3년제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제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제	중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제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제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제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3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청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주간)	2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4년제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야간)	2년제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에너지소방전공	4년제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제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3년제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포항대학교	소방방재안전과	2년제
	계문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제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2년제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제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제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4년제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4년제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국제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3년제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4년제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4년제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제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4년제				
2020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4년제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강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소방방재환경전공	4년제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연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2020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제	대림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과	3년제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제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제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제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3년제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2년제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제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4년제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2년제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에너지소방전공	4년제	
	경남도립거창대학	소방-전기계열 (소방방재전공)	2년제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충북도립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3년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제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승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포항대학교	소방방재안전과	2년제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제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제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제	안동과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4년제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국제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용인승당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2년제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소방방재트랙	4년제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4년제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 전기전자계열	3년제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2021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4년제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소방방재환경전공	4년제	서울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강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대림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과	3년제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제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조선대학교	신산업융합학부 소방에너지시스템전공	4년제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제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제	중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건국대학교(글로벌 캠퍼스)		소방방재융합학과	4년제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3년제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제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2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2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에너지소방전공(주간)	4년제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제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설비소방학과(주간)	4년제	
경남도립거창대학		소방-전기계열 소방방재전공	2년제	동아대학교	경찰소방학과	4년제	수원과학대학교	소방안전설비 공학과	2년제	청운대학교	설비소방학과 (산업대학)	4년제	
경남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제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4년제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2년제	승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3년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안동과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충북도립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제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경주대학교		환경에너지방재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4년제	용인승당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2년제	포항대학교	소방방재안전과	2년제	
경주대학교		원자력방재학과	4년제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제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제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전기전자과 소방안전관리전공	3년제	우석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한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전기전자과 소방행정공무원전공	3년제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국제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3년제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김천대학교	경찰소방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소방방재트랙	4년제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제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소방행정전공	4년제					
2022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4년제	김천대학교	경찰소방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강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제	대구가톨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서울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제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조선대학교	신산업융합학부 소방에너지시스템 전공	4년제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제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소방방재환경전공	4년제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조선대학교	소방재난관리학과	4년제	
	건국대학교(글로벌 캠퍼스)	소방방재융합학과	4년제	대림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과	3년제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중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제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제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제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4년제	

연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경남도립거창대학교	소방전기계열 소방방재전공	2년제	대전보건대학교	재난소방건설안전과	3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에너지소방전공(주간)	4년제
	경남도립거창대학교	소방전기계열 전기전공	2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2년제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설비소방학과(주간)	4년제
	경남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2년제	수원과학대학교	소방행정학과	3년제	청운대학교	설비소방학과(산입대학)	4년제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스마트안전공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수원과학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공학과	3년제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3년제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수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아대학교	경찰소방학과	4년제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제	충북도립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승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방행정전공	4년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2년제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포항대학교	소방방재안전과	2년제
	경주대학교	원자력방재학과	4년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안동과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경주대학교	환경에너지방재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제
	경희사이버대학교	재난방재과학전공	4년제	동의과학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용인예술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2년제	한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제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제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고려사이버대학교	소방안전학부	4년제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4년제	우석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부산경상대학교	소방행정안전드론과	3년제	우송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소방방재트랙	4년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방안전관리전공(전문학사)	학점은행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방학 전공(학사)	학점은행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국제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3년제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소방행정전공	4년제			
2023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4년	김천대학교	경찰소방학과	4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강동대학교	소방안전전공	2년	김해대학교	산업소방안전과	2년	상지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주간)	2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	대구한의대학교	소방안전환경학과	4년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야간)	2년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전공	4년
	건국대학교(글로벌캠퍼스)	소방방재융합학과	4년	대림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과	3년	서울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조선대학교	소방재난관리학과	4년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조선대학교	소방에너지시스템전공	4년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방산업안전관리학과	2년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중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2년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창신대학교	소방방재전공	4년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	대전보건대학교	재난소방건설안전과	3년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	청양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경남도립거창대학	소방전기학부 소방방재전공	2년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2년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청운대학교	설비소방학과	4년
	경남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2년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스	스마트안전공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3년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수원과학대학교	소방행정학과(야간)	3년	충북도립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아대학교	경찰소방학과	4년	수원과학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공학과	3년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방행정전공	4년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	수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포항대학교	소방방재안전과	2년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	동양미래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
	경주대학교	환경에너지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승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한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경주대학교	소방방재드론학과	4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2년	신라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고려사이버대학교	소방안전학부	4년	동의과학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안동과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안전전공	4년	우석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호원대학교	소방전기융합학과	4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방학전공	학점은행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인명구조전공	4년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방안전관리전공	학점은행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			
	국제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부산경상대학교	소방행정안전관리과	2년	우송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연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2024	강동대학교	소방안전전공	2년	김천대학교	경찰소방학과	4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	김해대학교	산업소방안전과	2년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4년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	대구대학교	소방안전방재학과	4년	서영대학교	소방재난안전과(주간)	2년	유한대학교	안전소방학과	3년
	건국대학교(글로벌캠퍼스)	소방방재융합학과	4년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	서영대학교	소방재난안전과(야간)	2년	장안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소방안전환경학과	4년	서울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전남과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건양사이버대학교	산업안전소방학과	4년	대림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과	3년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2년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방산업안전관리학과	2년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전공	4년
	경남도립거창대학	소방전기학부	2년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조선대학교	소방에너지시스템전공	4년
	경남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대전보건대학교	재난소방건설안전과	3년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조선대학교	소방재난관리학과	4년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2년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충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3년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2년	수원과학대학교	소방행정학과	3년	창신대학교	소방방재전공	4년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스	스마트안전공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	수원과학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공학과	3년	청양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경운대학교	재난안전소방전공	4년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수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청운대학교	설비소방학과	4년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	동아대학교	경찰소방학과	4년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방행정전공	4년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	승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
	경희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전공	4년	동양미래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충북도립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신안산대학교(신규)	소방안전관리과	2년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고려사이버대학교	소방안전학부	4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2년	안동과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한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구미대학교	소방재난안전과	2년	동의과학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과	2년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방안전관리전공	학점은행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방학전공	학점은행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	우석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3년	부산가톨릭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4년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국제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	부산경상대학교	소방행정안전관리과	2년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2년	호원대학교	전기소방안전학과	4년

6-2

소방관련학과 인정 고등학교 현황

연도	연번	고등학교명	학과명	학년	응시기준 (해당연도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
2023	1	공주정보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21~'23년도 입학
	2	부산디지털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22~'23년도 입학
	3	성동공업고등학교	소방안전기계과	3년	'23년도 입학
	4	성동공업고등학교	소방시설관리과	3년	
	5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안전관리과	3년	'23년도 입학
	6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전기과	3년	
	7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기계과	3년	
	8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설비과	3년	
	9	조일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20~'23년도 입학
	10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소방안전관리과	3년	'20~'23년도 입학
2024	1	공주정보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24년도 입학
	2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3	부산디지털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4	성동공업고등학교	소방안전기계과	3년	
	5	성동공업고등학교	소방시설관리과	3년	
	6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안전관리과	3년	
	7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전기과	3년	
	8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기계과	3년	
	9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설비과	3년	
	10	조일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11	청담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12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소방안전관리과	3년	

분야		내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분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전문응급처치학 총론 분야		내용
응급의료체계의 개요	1) 응급의료체계	- 구성요소, 교육 및 질관리
	2)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	- 역할과 책임, 전문성유지
	3) 응급구조사의 안녕	- 안전과 건강, 스트레스 관리
	4) 의료/법적 책임	- 의료/법적 책임(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각각 하위법령 포함) - 응급구조사의 윤리
	5) 응급의료 통신 및 기록	- 응급의료 통신, 응급의료 기록
환자이송 및 구급차 운용	1) 환자구조 및 이송	- 환자이동 및 이송, 구조, 항공이송
	2) 구급차운용	- 구급차운용, 구급차 관리
대량 재난	1) 재난관리	- 재난대비계획, 중증도 분류 - 대량환자이송, 재난현장의 응급처치
	2) 특수재난	- 특수재난관리
전문응급처치학 각론 분야		내용
전문심장소생술	1) 심정지	- 심정지환자의 처치, 소생후 치료
	2) 임박한 심정지	- 서맥환자의 처치, 빈맥환자의 처치 - 저혈압, 쇼크 및 급성폐부종 환자의 처치
	3) 관상동맥증후군	-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처치
	4) 뇌졸중	-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처치
	5) 특수상황 심정지	- 특수질환과 관련된 심정지 환자의 처치
전문소아소생술	1) 신생아소생술	- 신생아소생술
	2) 소아소생술	- 소아소생술
전문외상처치술	1) 손상기전과 외상진료체계	- 외상진료체계, 손상기전

	2) 연조직손상	- 연조직손상
	3) 화상	- 열화상, 특수화상
	4) 출혈 및 쇼크	- 출혈 및 쇼크
	5) 근골격계 손상	- 근골격계 손상
	6) 체강 손상	- 흉부 손상, 복부 손상
	7) 두경부 척추 손상	- 뇌 손상, 척추 손상, 두경부 손상
	8) 환경 응급	- 환경 응급
	9) 중증 손상	- 다발성 손상, 중증 외상소생술
내과 응급	1) 호흡계 응급	- 호흡계 응급질환
	2) 심혈관계 응급	- 심혈관계 응급질환
	3) 내분비계 응급	- 내분비계 응급질환
	4) 신경계 응급	- 신경계 응급질환
	5) 소화기계 응급	- 위장관계 응급질환 - 간담도췌장 응급질환
	6) 비뇨생식기계 응급	- 비뇨생식기계 응급질환
	7) 조혈계 응급	- 조혈계 응급질환
	8) 면역 질환	- 아나필락시스
	9) 감염 질환	- 응급감염질환
	10) 중독 질환	- 중독 - 곤충이나 동물에 의한 독소의 주입
	11) 눈, 귀, 코, 목 질환	- 눈, 귀, 코, 목 응급질환
	12) 비외상성 근골격계 질환	- 근골격계의 퇴행성, 염증성, 감염성 질환
특수 응급	1) 소아 응급	- 소아평가, 소아응급, 소아외상
	2) 산부인과 응급	- 부인과질환, 산과응급 - 임신합병증, 응급분만
	3) 정신질환과 행동응급	- 정신질환, 행동응급
	4) 노인 응급	- 노인 응급질환

9-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종목	측정방법 등
악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근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배근력계 ○ 측정 단위: kg ○ 측정 방법: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혔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시행한다.

종목	측정방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cm ○ 측정 방법: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회 ○ 측정 방법: 양발을 3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별도 ○ 측정 기록: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 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등을 금지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 시료가 분석되며, B 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 시료의 분석 결과는 본시험의 시행기관으로 통보됩니다.
- A 시료의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 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치료목적 사용면책 등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B 시료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 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단되나, B 시료의 분석 결과 역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 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의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치료목적사용 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 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 분석(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 대해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 종목 및 직업 "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 금지약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Clenbuterol

2. 이뇨제: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 ▶pentazocine ▶pethidine

□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 (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장비명	대상 차량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						해당 군 면허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특수			육군	해군	공군
							구난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군용 1¼톤	K-1XX 계열	5~6인승			●					소형차량	보통차량	2종보통
	K-15X 계열	4~8인승			●					중형차량	-	2종보통
	K-115구급차	5~6인승		●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산악작전차량				●					소형차량	-	-
군용 1¼톤	K-3XX 계열	2~4.5톤			●					중형차량	보통차량	2종보통
	K-35X 계열	4~8인승			●					중형차량	-	2종보통
	K-312구급차	10인승		●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군용 2½톤 계열	K-5XX 계열	4톤		●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K-511(병력수송)	18~20인승	●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K-513 유조차량 계열	3,000ℓ 초과위험물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K-514 사이트 간이버스	24인승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105mm 견인포 발칸포 방공포 포차	750kg 초과 견인		●					●	중형차량 •특수(견인)	보통차량 •특수(견인)	1종보통 특수(소형견인)
	KM9 제독차			●						중형차량	-	1종보통
군용 5톤 계열	K-7XX 계열	8~10톤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보통
	K-711(병력수송)	20~24인승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K-712 구난차량	8~10톤		●			●			대형차량 •특수(구난)	대형차량 •특수(구난)	1종대형 •특수(구난)
	K-713 덤프차량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K-715 견인차량							●		특수(견인)	특수(견인)	특수(대형견인)
	K-719 리본부교차량	19.3톤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155mm이상 견인포 방공포 포차	750kg 초과 견인		●					●	대형차량 •특수(견인)	대형차량 •특수(견인)	-
	K10 제독차			●						대형차량	-	1종보통
군용 10톤	K-8XX 계열	12톤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K-912 구난차량		●				●			대형차량 •특수(구난)	대형차량 •특수(구난)	1종대형 •특수(구난)
	K-915 견인차량		●					●		대형차량 •특수(견인)	대형차량 •특수(견인)	1종대형 특수(대형견인)
	M-98x 탄약운반차		●							대형차량	-	-
	M-98x 구난차량		●				●			대형차량 •특수(구난)	-	-
	K-239 탄약 운반차	30톤	●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신형비치매트차량	26톤	●							-	대형차량	-
군용 기타	K806, K808 차륜형장갑차		●							대형차량	-	-
	다목적 특수무장차		●							대형차량	-	-
	RS, LS 패트리어트 차량	15톤	●							-	-	1종대형
	GMT 패트리어트 차량	750kg 초과 견인	●					●		-	-	1종대형 특수(대형견인)
	ECS 패트리어트 차량	7톤		●						-	-	1종보통
	RPT 패트리어트 차량	750kg 초과 견인		●				●		-	-	1종보통 특수(대형견인)
	K-916, 917, 918 천궁 차량		●							-	-	1종대형
	MRAP	12.6톤		●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한국형 PLS		●							대형차량	-	-	

□ (채점) 전산 판독(이미지 스캔) 결과에 따름

□ (유의사항) 미준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① 답안지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이미지 스캐너로 채점하므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적색펜,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면 무효 답안(미마킹) 처리될 수 있고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할 경우 중복 답안(이중마킹)으로 처리될 수 있음
- ② 답안지는 전산 판독 처리되므로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가 구겨지거나 낙서, 이물질 등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됨(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 ③ 수정액 및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하며 흰색 수정테이프 사용 시 불완전한 수정 처리, 번짐, 뜯김 등 발생하는 판독 채점 결과 등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수정 시 시험종료시간 고려하여 답안지 교체 작성 권고)

□ (작성요령)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잘못 작성(표기) 시 모든 불이익은 응시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① 인적사항란: 본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

- (성 명) 본인 성명을 한글 정자로 기재
- (필적확인) 예시문을 본인 필적으로 기재
- (생년월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숫자 해당란에 "●"로 표기
- (응시번호)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숫자 해당란에 "●"로 표기

② 답안란: 한 문항에 한 개의 번호만 완전하고 올바른 "●" 표기해야 함

□ 올바른 표기 : ●

□ 잘못된 표기 : 

※ 채점오류(귀책사유) 사례: 이의제기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음

- ○ ● ⊖ ● ⊙ (2곳에 표기, 번짐·예비마킹 흔적 포함)
- ○ ● ○ ◐ ⊙ (불완전한 수정처리, 수정테이프 뜯김 포함)
- ⚡ ° ⊖ ⊙ ⊙ (주위 표기, 답안란 여백의 낙서 포함)
- ○ ⊙ ● ○ ○ (점이나 흐리게 표기, 연필·적색펜 등 표기 포함)

근무경력 사실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이 사실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 경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년 월)

입증인(1)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연락전화번호: - -

입증인(2)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연락전화번호: - -

붙임: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부

소방청장 귀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학력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대학교)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원)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동 학과는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 연락처: 담당자 (전화번호:)

2024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소방청장 귀하

【서식 3】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목록

경력경쟁채용 증빙서류 세부 목록

※ 제출 여부에 '○' 표기 후, 첫 장에 철하여 제출

성명	응시번호	응시분야	임용예정 시·도	임용예정 직급	응시요건

연번	제출서류	제출 여부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주민등록 초본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4	소득금액증명원	
5	갑근세증명서 또는 급여계좌내역서 1부	
6	근로계약서 1부	
7	사업자등록증 등 1부	
8		
9		
10		
11		
12		

※ 해당 증빙서류 앞부분에 함께 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관명 (부서명)	직위 (근무형태)	경력기간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근무일수 (개월 일)	조희대상기관 인사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기관현황	회사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형태	
경력사항							
	총 근무기간						
징계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1		확인자 2	
성명		성명	
연락처		연락처	
서명		서명	

2024년 월 일

_____ 사 (직인)

소방청장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되었으면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비상근: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은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0000과 (☎ ※ 검증 시 사용하는 별도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
- 주의사항: 확인서 기재 사항이 허위로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른 귀책 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기시험 문제문의서

문 제 문 의	성 명		응시번호	
연 락 처	휴 대 전 화			
	전 자 우 편			
응 시 분 야	응 시 시 도			
	응 시 분 야			
문 의 과 목	해 당 과 목			
	문 향 번 호	번		

<출제문제>

<사유 및 관련근거> - 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

<응시자 의견>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 접수자 인적사항

시 험 명		응 시 계 급	
성 명		응 시 번 호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2. 정정 신청 내용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3. 정정 사유

4. 첨부: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진
(3cm×4cm)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 분야	성명	생년월일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시력	맨눈	좌: 우:	색	신	청력
	교정	좌: 우:	(색	각)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흡기질환		
간	질	환	신경질환		
소	화	기	피부질환		
순	환	기	정신질환 (TBPE 검사 포함)		
비	뇨	기	혈청검사(매독)		
흉	부	X선	기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 합 격	불합격 또는	
합 격 여 부	[] 불 합 격	합격 사유	
	[]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1. 응시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남 [] 여 []
생년월일		응시번호	
핸 드 폰		이 메 일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과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응급 []

기간(주/월) _____

4. 담당의사 서약

성명		전공분야	
주소			
전화(팩스)		전자우편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하며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하고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비 고

-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도핑테스트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연 락 처	

상기 본인은 20____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
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6호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
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024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소방청에서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상의무이행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4조,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연구논문실적, 특허실적, 병역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응시 결격사유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느기관	제공근거 및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국세청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 사실 등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대학 등 학위 발급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 번호, 취득일자, 전공명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자격증 발급기관	- 임용령 제15조, 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질병관리청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 관리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대상자 유무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자 명부 관리를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채용 절차 종료 후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채용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2. 이용사무(이용목적): 부정행위, 결격·범죄, 자격(응시요건) 확인 등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2	결격·범죄 통합 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증
4	자격(면허)증, 응시자격 등 확인
5	복수국적 여부 확인
6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점 확인
7	병역의무 이행여부 확인
8	기타 채용시험 관련 제출서류

※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출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국가기술자격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인 방법(공동이용 행정정보)으로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아 서류의 진위 확인, 결격사유 조회 등이 불가능할 때는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방청장 귀하

제 2024 - 호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

1. 제출대상기관: 소방청

2. 인적사항

성명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1*****
계급	00	임관구분	부사관 000기
임관일자	19.03.01	전역일자	20.12.31
복무기간	2년 9개월	군사특기	보병

위 사람은 2000.03.01. ~ 2000.12.31.까지 해병대 0사단 0여단 00대대 0중대에서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해병대 임무형훈련(공정훈련) 및 다수의 전술훈련을 참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공수기본교육 이수('19.00.00.) / 인사명령(부사관) 제00호

해병대사령관 해병증장 ○○○○

사령관
직인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 공고문은 119고시(<https://119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